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4. 16(금) 10:00

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
지원에 관한 조례안
(도시안전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74호
- 나. 제 출 자 : 류명기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4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4. 5.

2. 제안이유

화재사고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, 보육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(안 제3조)
- 나. 예산지원(안 제4조)
- 다. 교육지원(안 제5조)
- 라. 홍보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4. 5. ~ 4. 12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(안 제3조)

→ 공공기관, 의료기관, 보육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함.

2) 예산지원(안 제4조)

→ 대상 시설에 대하여 방연마스크의 구입·비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

3) 교육지원(안 제5조)

→ 화재 관련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

4) 홍보(안 제6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,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479호, 2020. 8. 1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